2024년 개정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가이드북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

CESS

Certified
Excellent
Shipping Company and
Shipper

해양수산부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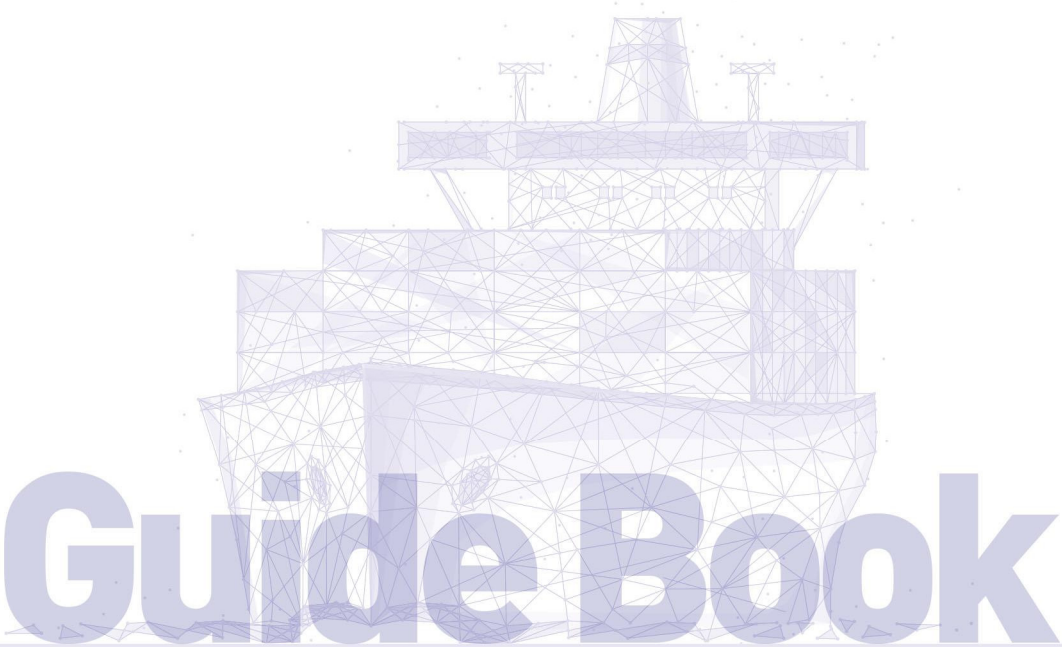

Guide Book

목차

Ⅰ 인증제도 개요 04

Ⅱ 인센티브 현황 07

Ⅲ 인증심사 절차 11

Ⅳ 세부 심사기준 12

Ⅴ 부 록 27

1. 관련 서식 27
2. 관련 규정 49
3.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신청방법) 62

Ⅰ 인증제도 개요

01 추진경과

❑ 해상 **수출입 경쟁력 강화** 및 **선화주 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선화주 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범부처 합동「**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포함

❑ 선화주 상생협력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도입**(「해운법」개정, '20.2.21 시행)

-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화주**(포워더)에 대한 **세제혜택**(조특법 개정), **선사에 대한 항비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02 인증제도 개요

❑ **법적근거**

- 해수부장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부여(**해운법 제47조의2**)

❑ **인증전담기관**

-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인증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20. 3. 12)

❑ **인증 신청자격**

- **(화주)** 국제물류주선기업 및 수출입기업
- **(선사)** 「해운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인증신청 및 제출서류

•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처(한국해양진흥공사)에 우편으로 접수

- '20. 7. 20. (월) ~ 수시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7층, 사업관리부
* 문의처 : 한국해양진흥공사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센터(051-795-1651~2)

< 제출서류 >

구분		비고
공통	기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해당시), 사용인감계(사용시)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화주 상생 의지	자유서식
	선화주 상생 계획	자유서식 또는 <서식 제1호> 참조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무역통계진흥원 발급서류*
	재무 안정성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제표)
	해운법·공정거래법 등 제도 준수성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확인서
	경제 기여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운산업 기여도	운항선박명세서(선사만 해당)
화주	기본사항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제4호)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률	무역통계진흥원 발급서류*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 지속성	무역통계진흥원 발급서류*
	기타 동반 성장 노력	-
	표준계약서 이용실적	<서식 제2호>
	장기계약 체결 비중	<서식 제2호>
	최소약정물량 준수	<서식 제2호>
선사	서비스 품질	<서식 제3호>, <서식 제9호>
	차별화 서비스	<서식 제4호>, <서식 제9호>
	항로 배선 계획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화주 대응 수준	<서식 제7호>, <서식 제9호>
	친환경 경영 참여도	<서식 제10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 가이드북(P62) 참조
- 화주사: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 1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 현황 1부
- 선주사: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 1부

☞ 부록(붙임 및 서식)과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우수선화주인증>인증심사>심사신청) 참조

❑ 인증기준 및 등급

- **(기준)** ① 산정된 심사항목별 점수합계가 70점 이상일 것
  ②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 **(등급)**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 1등급, 70점 이상 : 2등급

※ 각 평가위원 점수(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산정)을 합산하여 산술평균치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인증점검

- **(정기점검)**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를 그 인증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 정기점검
- **(수시점검)**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연1회에 한정하여 수시점검 가능

☞ 점검 통보받은 기업은 인증 우수 선화주기업 점검 신청서(붙임 제2호)를 작성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점검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이의 신청

- 인증심사 및 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 제출
- 인증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30 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Ⅱ 인센티브 현황

❑ 인센티브 요약

대상	인센티브
공통	① 수출입은행 8개 정책금융 최대 0.2%p **우대금리** ② 항만배후단지 입주, 해운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친환경 선박 건조·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③ 우수기업 **정부포상** (연말 정부포상 규모 협의) ④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률 및 보증요율 등 할인
선사	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인증 등급에 따라 30~50%)
화주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포워더에 한함) → 1% 기본공제+전년대비 증가한 비용의 3% 추가 공제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중 [별표 2] 참조 ②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1.5배 확대

❑ 공통 인센티브

- **(우대금리)** 수출입은행 수출촉진자금 등 8개 정책자금* 최대 0.2%p 우대금리 제공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제출 시 인증 유효기간 동안 우대금리 적용

  * 수출촉진자금,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 수입기반자금대출,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

- **(정부사업가점)**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해운 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친환경 선박 및 설비 정부지원사업 가점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가점(항만공사별 1~3점), 해운 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가점(3점), 친환경 선박 및 설비 지원 사업 가점(2점)

- **(우수기업 정부포상)**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상생협력 성과가 가장 좋은 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 실시

• **(투자수익율 및 보증요율 등 할인)**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수익율 및 보증요율 할인

구분	인센티브
선박 투자 및 보증	1등급 0.04%, 2등급 0.02%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① 입찰보증: 1등급 0.0012%, 2등급 0.0005% ② 계약이행보증: 1등급 0.0035%, 2등급 0.0014%
신용보증	1둥급: 0.0738% 할인, 2등급: 0.0295% 할인
컨테이너 박스 투자 및 보증	1등급: 0.04%, 2등급: 0.02%
항만터미널, 물류시설, 해운항만장비 투자 및 보증	1등급: 0.04%, 2등급: 0.02%

※ 구체적인 사업별 할인 여부는 적용은 공사 「투자수익 및 보증료 운용세칙」등 내규에 따름

❑ 선사 인센티브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인증 받은 선사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 및 정박료 30~50% 감면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50%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30%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 **(선박가치평가 수수료 할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가치평가서 발급 시 건당 수수료 최대 50% 할인

❑ 화주 인센티브

• **(무역보증)** 무역보증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에 대한 **보증한도 1.5배 확대**

• **(법인세 공제)** 우수 화주(포워더)에 대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한 **운송비용의 1% 기본공제**, 전년대비 증가한 비용의 **3% 추가공제**

- **(공제요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며, 매년 **지출비용 비율이 증가**할 것

☞ 신청절차 : 화주 ⇨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작성 ⇨ 관할 세무서 제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앞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 여, 부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금액(ⓐ × ⓑ)
	⑥ 해당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	1/100	원
	⑦ 증가된 운송비용 (= ⑥ - 직전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	3/100	원
	⑧ 공제금액의 합계		원
⑨ 산 출 세 액			원
⑩ 한 도 액(⑨×10/100)			원
⑪ 공 제 세 액(⑧과 ⑩ 중 적은 금액)			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란④은 「해운법」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를 적습니다.
2. 공제금액란⑥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해운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입니다.
3. 공제금액란의 운송비용란(⑥, ⑦)은 「해운법」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단,「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 · 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며,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4. ⑨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㉓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⑳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Ⅲ 인증심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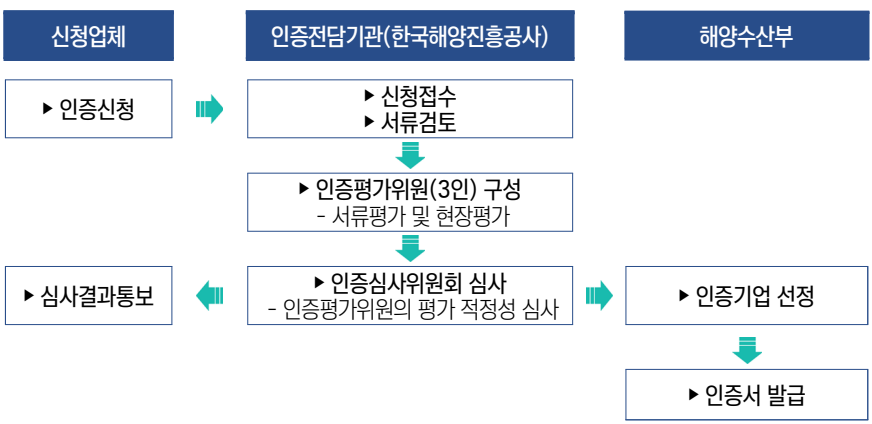

※ 인증 접수일로부터 90영업일 이내에 인증여부 결정

- **(서류검토)** 인증전담기관이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구비 여부를 검토하고, 미비서류 등에 대한 보완요청
- **(인증평가)** 사전에 구성된 인증평가단(50인 이상의 전문가 그룹) 중 신청인별로 **3명의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이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
  -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평가 진행**
- **(인증심사위원회* 심사)** 인증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적정성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당연직 2명(해수부, 전담기관), 민간위원 5명(교수, 연구위원, 변호사 등)
- **(심의결과 통보)**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 **(인증서 발급)** 해수부장관은 심의 결과에 따라 인증기업 선정 및 인증서 발급

Ⅳ 세부 심사기준

01 심사항목

인증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제출서류
공통		리더십 (10)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화주 상생 의지(3)	최고 의사결정자가 승인한 선화주 상생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선화주 상생 계획(7)	선화주 상생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사업 안정성 (10)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5)	① 최근 3년간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②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제4호 서식)
			재무 안정성(5)	매출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등 재무실적을 나타내는 서류(회계보고서상의 재무제표 첨부)
		공익성 (20)	「해운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준수 정도(7)	① 공정거래법(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사항 확인서 ② 해운법 위반사항 확인서(인증전담기관에서 확인)
			경제 기여도(7)	최근 2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월 말 기준)
			해운산업 기여도(6)	① 화주 : 최근 3년간 컨테이너물동량 실적(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② 선사 : 운항선박명세서, 전년도 운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핵심기준	화주	동반성장 노력 (40)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률(15)	① 최근 3년간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②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제4호 서식)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 지속성(15)	① 최근 3년간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 및 직전년도 외항 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현황(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②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제4호 서식)
			그 밖의 동반성장 노력(10)	설문평가서(인증전담기관에서 확인)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 (20)	표준계약서 이용실적(3)	전년도 표준계약서 이용실적을 나타내는 서류
			장기계약 체결 비중(12)	전년도 장기계약으로 체결된 물동량 비중을 나타내는 서류(제2호 서식)
			최소약정물량 준수(5)	전년도 최소약정물량 제공에 관한 의무사항이 명시된 계약서
	선사	상생 서비스 수준 (30)	서비스 품질(15)	정시성수준 및 설문평가서(인증전담기관에서 확인)
			선사의 차별화 서비스(15)	① 차별화 서비스 제공사항을 나타내는 서류 ② 설문평가서(인증전담기관에서 확인)
		해운 서비스 전략 (30)	항로 배선 계획(8)	항로 배선 계획, 실행가능성, 추진사항 등을 나타내는 서류
			화주 대응 수준(12)	① 설문평가서(인증전담기관에서 확인) ② 우수화주전담팀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고객지원서비스 매뉴얼 규정 등을 나타내는 서류
			친환경 경영 참여도(10)	①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도(인증전담기관에서 확인) ② 친환경 경영계획서(제10호 서식)

02 세부 심사기준

1. 공통기준

❑ 리더십(10점)

- 최고 의사결정자의 선화주 상생 의지(3점)

* 증빙서류 : 선화주 상생 사업계획서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승인한 내부 결재문서 (기안자 및 결재자 성명, 결재일자, 문서번호 등 품의서)

구 분	평가점수
당해연도 선화주 상생협력 내용이 없거나, 사업계획서 임원진 미승인	0
당해연도 선화주 상생협력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임원진(이사) 승인	1
당해연도 선화주 상생협력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최고의사결정자의 승인	3

☞ **[참고]** 법인등기사항증명원 '임원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대표이사 및 임원진(이사) 승인이 필요하며, 결재문서는 인증신청을 위한 승인 내용이 아닌 당해 연도 선화주 상생 사업계획서 승인 내역이어야 함

- 선화주 상생 계획(7점)

* 증빙서류 : 당해연도 선화주 상생협력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서식 제1호 참조)

구 분 (선화주 상생협력 목표 및 전략)	평가점수
-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계획서 상 선화주 상생협력 목표 및 발전 전략이 부재함	0
- 선화주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있으나 구체적으로 계획이 미비함	1
- 선화주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제시하는 계획이 구체적이나 단계적인 세부전략 및 프로그램 마련 미비함	3
- 선화주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강화,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됨 - 내·외부적인 분석을 통해 단계적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관계개선도, 파트너십 체결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마련됨 - 계량지표(협력사 만족도, 환경개선도 등) 및 비계량지표(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 확립 등) 마련됨	5

구 분 (실현가능성)	평가점수
- 미제출 및 계획서 상의 설정된 선화주 상생협력 목표 및 전략 등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 결여	0
- 계획서 상의 설정된 선화주 상생협력 목표 및 전략 등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 낮음	1
- 계획서 상의 설정된 선화주 상생협력 목표 및 전략 등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 높음	2

❑ 사업안정성(10점)

-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5점)

* 증빙서류 :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제4호 서식)
최근 3년간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자료)

구 분	평가점수
최근 3년간 물동량증가율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컨테이너 전체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 감소	0
최근 3년간 물동량증가율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컨테이너 전체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 0% 이상 ~ 1% 미만	1
최근 3년간 물동량증가율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컨테이너 전체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 1% 이상 ~ 2% 미만	2
최근 3년간 물동량증가율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컨테이너 전체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 2% 이상 ~ 3% 미만	3
최근 3년간 물동량증가율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컨테이너 전체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 3% 이상 ~ 4% 미만	4
최근 3년간 물동량증가율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컨테이너 전체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 4% 이상	5

【산정방법】

①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 산정 = 수출입무역통계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ets/) 수출입물류통계 → 총괄 → 검색기준 (운송구분 전체, 입출항구분 전체, B/L유형 전체, 조회기간 최근3년, 중량단위 톤) → FCL(입항 수입·환적, 출항 수출·환적)+LCL (입항 수입·환적, 출항 수출·환적)

② 물동량증가율 산정 = (종료년도값/시작년도값)^{(1/(종료년도-시작년도)}-1

③ 시작년도와 종료년도는 각각 신청년도 기준 직전사업년도와 전전전사업년도를 의미함 (예. 2023년 신청 시 2020년과 2022년)

- 재무안정성(5점)

*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액) 등 재무실적을 나타내는 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구 분		평가점수
영업이익률 (50%)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0% 미만	0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0% 이상 ~ 1% 미만	1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1% 이상 ~ 2% 미만	2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2% 이상 ~ 3% 미만	3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3% 이상 ~ 4% 미만	4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4% 이상	5
부채비율 (50%)	최근 3년 평균 부채비율 400% 이상	0
	최근 3년 평균 부채비율 300% 이상 ~ 400% 미만	1
	최근 3년 평균 부채비율 200% 이상 ~ 300% 미만	2
	최근 3년 평균 부채비율 100% 이상 ~ 200% 미만	3
	최근 3년 평균 부채비율 80% 이상 ~ 100% 미만	4
	최근 3년 평균 부채비율 80% 미만	5

【산정방법】

① 영업이익률 = 3개년 영업이익의 합계 ÷ 3개년 매출액 합계
② 부채비율 = 3개년 부채비율의 산술평균

❑ 공익성(20점)

- 해운법 · 공정거래법 등 제도 준수성(7점)

*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해상운송 및 계약 등에 관한 해당부처 위반사실 확인서

구 분	평가점수
최근 3년간 관련 법규 위반사항 7건 이상	0
최근 3년간 관련 법규 위반사항 6건	1
최근 3년간 관련 법규 위반사항 5건	2
최근 3년간 관련 법규 위반사항 4건	3
최근 3년간 관련 법규 위반사항 3건	4
최근 3년간 관련 법규 위반사항 2건	5
최근 3년간 관련 법규 위반사항 1건	6
최근 3년간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없음	7

☞ [참조1]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case.ftc.go.kr)에서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법(입찰담합, 입찰담합 제외)의 인증평가 접수일 기준 3년간 위반사실 증명서 발급
☞ [참조2] 해운법 위반사실은 인증전담기관이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확인

- 경제 기여도(7점)

※ 중소기업 별도 기준

* 증빙서류 : 신청일로부터 직전 2년간 연도말 기준 고용인원을 나타내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구 분(대기업 및 중견기업)		평가점수
고용인원 수(50%)	전년도 기준 고용인원 30명 미만	0
	전년도 기준 고용인원 30명 이상 ~ 50명 미만	1
	전년도 기준 고용인원 50명 이상 ~ 100명 미만	3
	전년도 기준 고용인원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5
	전년도 기준 고용인원 300명 이상	7
고용인원 증가율(50%)	전년대비 고용인원 감소	0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율 0% 이상 ~ 1% 미만	1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율 1% 이상 ~ 1.5% 미만	3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율 1.5% 이상 ~ 2% 미만	5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율 2% 이상	7

☞ [참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간이세액-코드(A01) 내역 확인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증빙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적용)

구 분(중소기업)		평가점수
고용인원 수(50%)	전년도 기준 고용인원 50명 미만	4
	전년도 기준 고용인원 50명 이상 ~ 100명 미만	6
	전년도 기준 고용인원 100명 이상	7
고용인원 증가율(50%)	전년대비 고용인원 감소	0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율 0% 이상 ~ 1% 미만	1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율 1% 이상 ~ 2% 미만	3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율 2% 이상 ~ 3% 미만	5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율 3% 이상	7

- 해운산업 기여도(6점)

* 증빙서류 :선사 - ① 운항선박명세서(전년도 12.31.말 기준)
② 전년도 운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주 - ①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제4호 서식)
② 최근 3년간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서류)

구 분(선사)	평가점수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선복량 5,000TEU 미만	0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선복량 5,000TEU 이상 ~ 10,000TEU 미만	3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선복량 10,000TEU 이상 ~ 50,000TEU 미만	4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선복량 50,000TEU 이상 ~ 100,000TEU 미만	5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선복량 100,000TEU 이상	6

구 분(화주 : 대기업 및 중견기업)	평가점수
2×(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원양 운송물량)+(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연근해 운송물량) 10,000TEU 미만	0
2×(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원양 운송물량)+(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연근해 운송물량) 10,000TEU 이상~30,000TEU 미만	3
2×(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원양 운송물량)+(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연근해 운송물량) 30,000TEU 이상 ~ 40,000TEU 미만	4
2×(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원양 운송물량)+(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연근해 운송물량) 40,000TEU 이상 ~ 50,000TEU 미만	5
2×(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원양 운송물량)+(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연근해 운송물량) 50,000TEU 이상	6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증빙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적용)

구 분(화주: 중소기업)	평가점수
2×(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원양 운송물량)+(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연근해 운송물량) 1,000TEU 미만	0
2×(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원양 운송물량)+(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연근해 운송물량) 1,000TEU 이상 ~ 4,000TEU 미만	3
2×(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원양 운송물량)+(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연근해 운송물량) 4,000TEU 이상 ~ 7,000TEU 미만	4
2×(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원양 운송물량)+(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연근해 운송물량) 7,000TEU 이상 ~ 10,000TEU 미만	5
2×(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원양 운송물량)+(최근 3년 평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통한 연근해 운송물량) 10,000TEU 이상	6

2. 핵심기준 (화주)

❑ 동반성장 노력(40점)

-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률(15점)

*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서류),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제4호 서식)

항로	구 분	평가 점수
원양 (가중치 a)	최근 3년 평균 전체 해상운송물량 대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운송물량 3% 미만	0
	최근 3년 평균 전체 해상운송물량 대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운송물량 3% 이상 ~ 5% 미만	3
	최근 3년 평균 전체 해상운송물량 대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운송물량 5% 이상 ~ 10% 미만	6
	최근 3년 평균 전체 해상운송물량 대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운송물량 10% 이상 ~ 16% 미만	9
	최근 3년 평균 전체 해상운송물량 대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운송물량 16% 이상 ~ 21% 미만	12
	최근 3년 평균 전체 해상운송물량 대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운송물량 21% 이상	15
연근해 (가중치 1-a)	최근 3년 평균 전체 해상운송물량 대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운송물량 10% 미만	0
	최근 3년 평균 전체 해상운송물량 대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운송물량 10% 이상 ~ 15% 미만	3
	최근 3년 평균 전체 해상운송물량 대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운송물량 15% 이상 ~ 30% 미만	6
	최근 3년 평균 전체 해상운송물량 대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운송물량 30% 이상 ~ 48% 미만	9
	최근 3년 평균 전체 해상운송물량 대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운송물량 48% 이상 ~ 66% 미만	12
	최근 3년 평균 전체 해상운송물량 대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운송물량 66% 이상	15

【산정방법】

① 원양 : 미주, 구주, 서남아, 중동, 호주 및 기타 / 연근해 : 일본, 중국, 동남아

② 전체 해상운송물량을 1로 볼 때 원양 물동량(a)과 연근해 물동량(1-a)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최종 점수 산정

③ 점수산정 예시: 원양 4,000TEU(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운송물량 650TEU), 연근해 6,000TEU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운송물량 4,000TEU)인 화주

원양 : $\frac{650}{4000}$ ×100 = 16.25%→ 12점, 연근해 : $\frac{4000}{6000}$ ×100 = 66.6%→ 15점

⇒ 원양(40%)+연근해(60%) = 12×0.4+15×0.6=13.8

- 외항 정기 화물운송업자 이용 지속성(15점)

* 증빙서류 : 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 현황 및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서류)
②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제4호 서식)

구 분(대기업 및 중견기업)	평가점수
전년도 6개월(월별 10TEU) 이상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5개사 이하 이용	0
전년도 6개월(월별 10TEU) 이상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6개사 이용	1
전년도 6개월(월별 10TEU) 이상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7개사 이용	2
전년도 6개월(월별 10TEU) 이상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8개사 이용	3
전년도 6개월(월별 10TEU) 이상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9개사 이용	4
전년도 6개월(월별 10TEU) 이상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10개사 이상 이용	5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증빙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적용)

구 분 (중소기업)	평가점수
전년도 6개월(월별 10TEU) 이상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1개사 이하 이용	0
전년도 6개월(월별 10TEU) 이상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2개사 이용	1
전년도 6개월(월별 10TEU) 이상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3개사 이용	2
전년도 6개월(월별 10TEU) 이상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4개사 이용	3
전년도 6개월(월별 10TEU) 이상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5개사 이용	4
전년도 6개월(월별 10TEU) 이상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6개사 이상 이용	5

구 분	평가점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 물동량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	0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 물동량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경우(1% 미만)	2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 물동량이 전년도 대비 1% 이상 ~ 3% 미만 증가한 경우	4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 물동량이 전년도 대비 3% 이상 ~ 5% 미만 증가한 경우	6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 물동량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 7% 미만 증가한 경우	8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 물동량이 전년도 대비 7% 이상 증가한 경우	10

- 기타 동반성장 노력(10점)

* 증빙서류 : 인증전담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서식 제8호 참조)

구 분	평가점수
기타 동반성장 노력 전체 만족도 10점 미만	0
기타 동반성장 노력 전체 만족도 10점 이상~20점 미만	2
기타 동반성장 노력 전체 만족도 20점 이상~30점 미만	4
기타 동반성장 노력 전체 만족도 30점 이상~40점 미만	6
기타 동반성장 노력 전체 만족도 40점 이상~50점 미만	8
기타 동반성장 노력 전체 만족도 50점	10

☞ [참조] 인증전담기관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화주사의 만족도(서식 제8호) 평가 실시

❑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20점)

•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3점)

* 증빙서류 : 전년도 표준계약서 이용실적을 나타내는 서류(서식 제2호 참조)

구 분	평가점수
전년도 장기계약 체결 시 이용한 표준계약서 없음	0
전년도 장기계약 체결 시 이용한 표준계약서 1건 이용	1
전년도 장기계약 체결 시 이용한 표준계약서 2건 이용	2
전년도 장기계약 체결 시 이용한 표준계약서 3건 이상 이용	3

- 장기계약 체결 비중(12점)

* 증빙서류 : 전년도 장기계약으로 체결된 물동량 비중을 나타내는 서류(서식 제2호 참조)

구 분	평가점수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 물동량 중 장기계약 물동량 없음	0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 물동량 중 장기계약 물동량 비중 0% 초과 ~ 10% 미만	4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 물동량 중 장기계약 물동량 비중 10% 이상 ~ 20% 미만	6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 물동량 중 장기계약 물동량 비중 20% 이상 ~ 35% 미만	8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 물동량 중 장기계약 물동량 비중 35% 이상 ~ 50% 미만	10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 물동량 중 장기계약 물동량 비중 50% 이상	12

☞ 인증평가 시 현장심사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와 체결한 장기계약서(계약 당사자, 당사자의 서명(또는 법인인감), 운임 및 요금, 운송물량 등 포함) 원본 확인

- 최소약정물량 준수(5점)

* 증빙서류 : 전년도 최소약정물량이 기재된 장기계약서 등 최소약정물량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서식 제2호 참조)

구 분	평가점수
전년도 장기계약 상 최소약정물량 준수 비율 30% 미만	0
전년도 장기계약 상 최소약정물량 준수 비율 30% 이상 ~ 50% 미만	1
전년도 장기계약 상 최소약정물량 준수 비율 50% 이상 ~ 60% 미만	2
전년도 장기계약 상 최소약정물량 준수 비율 60% 이상 ~ 70% 미만	3
전년도 장기계약 상 최소약정물량 준수 비율 70% 이상 ~ 80% 미만	4
전년도 장기계약 상 최소약정물량 준수 비율 80% 이상	5

☞ [참조] 인증평가 시 현장심사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와 체결한 장기계약서(계약 당사자, 당사자의 서명(또는 법인인감), 운임 및 요금, 운송물량 등 포함)에 대해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최소약정물량 준수 물동량 확인

※ 미준수 시 손해배상예정액(위약금)이 있고, 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준수한 것으로 갈음

3. 핵심기준 (선사)

❑ 상생 서비스 수준(30점)

- 서비스 품질(15점)

* 증빙서류 : ① 주요 고객사 리스트(서식 제3호 참조)
② 인증전담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서식 제9호 참조)
③ 전년도 운항스케줄

구 분(정성적 평가)	평가점수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만족도 수준이 10점 미만	0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만족도 수준이 10점 이상 ~ 20점 미만	2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만족도 수준이 20점 이상 ~ 30점 미만	4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만족도 수준이 30점 이상 ~ 40점 미만	6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만족도 수준이 40점 이상 ~ 50점 미만	8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만족도 수준이 50점	10

☞ [참조] 인증전담기관은 선사가 제출한 주요 고객사 리스트(서식 제3호)에 기재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선사의 만족도(서식 제9호) 평가 실시

구 분(정량적 평가)	평가점수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정시성 수준이 10% 미만	0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정시성 수준이 10% 이상 ~ 20% 미만	1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정시성 수준이 20% 이상 ~ 30% 미만	2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정시성 수준이 30% 이상 ~ 50% 미만	3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정시성 수준이 50% 이상 ~ 70% 미만	4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정시성 수준이 70% 이상	5

☞ [참조] 인증전담기관은 선사가 입력한 운항스케줄(운항 2주전)과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의 선박별 입항일시를 근거로 비교하여 준수여부 측정

- 선사 차별화 서비스(15점)

* 증빙서류 : ① 차별화 서비스 제공사항을 나타내는 보고서(서식 제4호 참조)
② 인증전담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서식 제9호 참조)

구 분(현장심사 평가)	평가점수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차별화 서비스 제공이 없음	0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차별화 서비스가 매우 미흡할 경우	2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차별화 서비스가 미흡할 경우	4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차별화 서비스가 보통인 경우	6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차별화 서비스가 우수한 경우	8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차별화 서비스가 매우 우수한 경우	10

☞ [참조] 선사가 제출한 보고서는 인증평가단이 서면으로 평가하고 현장심사를 통해 해당 보고서 내용 확인

구 분(정성적 평가)	평가점수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차별화 서비스 제공 수준이 5점 미만	0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차별화 서비스 제공 수준이 5점 이상 ~ 10점 미만	1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차별화 서비스 제공 수준이 10점 이상 ~ 15점 미만	2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차별화 서비스 제공 수준이 15점 이상 ~ 20점 미만	3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차별화 서비스 제공 수준이 20점 이상 ~ 25점 미만	4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차별화 서비스 제공 수준이 25점	5

☞ [참조] 인증전담기관은 선사가 제출한 주요 고객사 리스트(서식 제3호)에 기재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선사의 만족도(서식 제9호) 평가 실시

❑ 해운서비스 전략(30점)

- 항로배선 계획(8점)

* 증빙서류 : ① 당해연도 항로 계획 보고서(서식 제5호 참조)
② 서비스 기항지 현황(서식 제6호 참조)

구 분(현장심사 평가)	평가점수
항로 배선 계획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보고서 미제출	0
항로 배선 계획이 일회적이며, 현실성이 결여된 보고서	1
형식적인 항로 배선에 대한 보고서	2
화주 필요 항로 서비스 시장조사 분석을 통한 항로배선에 대한 보고서	3
화주 필요 항로 서비스 시장 조사 분석 및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항로배선에 대한 우선적인 자원배분, 실행가능성, 추진사항 등 보고서	4

☞ [참조] 선사가 제출한 보고서(서식 제5호)는 인증평가단이 서면으로 평가하고 현장심사를 통해 해당 보고서 내용 확인

구 분(기항지수-현장심사 확인)	평가점수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가 10곳 미만 기항할 경우	0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가 10곳 이상 ~ 20곳 미만 기항할 경우	1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가 20곳 이상 ~ 40곳 미만 기항할 경우	2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가 40곳 이상 ~ 60곳 미만 기항할 경우	3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가 60곳 이상 기항할 경우	4

☞ [참조] 선사가 제출한 기항지 현황(서식 제6호)에 대하여 인증평가단이 서면으로 평가하고 현장심사를 통해 작성내용 확인

- 화주대응 수준(12점)

* 증빙서류 : ① 고객대응프로세스 현황 보고서(서식 제7호 참조)
② 인증전담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서식 제9호 참조)

구 분(현장심사 평가)	평가점수
보고서 상 고객대응프로세스와 관련한 내용이 없거나 보고서 미제출	0
고객대응프로세스 수준이 미흡하며 관련규정 및 절차 등이 부재함	1.5
고객대응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으나 비정기적이고 형식적임	3
고객대응프로세스가 관련된 규정은 정형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고객 피드백에 대한 사후대응력이 미흡함	4.5
고객대응프로세스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6
우수화주전담팀이 마련되어 있고 체계적인 고객대응프로세스 정립과 정기적인 직원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8

☞ [참조] 선사가 제출한 보고서(서식 제7호)를 인증평가단이 서면으로 평가하고 현장심사를 통해 해당 보고서 내용 확인

구 분(정성적 평가)	평가점수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고객관리수준이 5점 미만	0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고객관리수준이 5점 이상 ~ 10점 미만	0.5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고객관리수준이 10점 이상 ~ 15점 미만	1.5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고객관리수준이 15점 이상 ~ 20점 미만	2.5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고객관리수준이 20점 이상 ~ 25점 미만	3.5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의 고객관리수준이 25점	4

☞ [참조] 인증전담기관은 선사가 제출한 주요 고객사 리스트(서식 제3호)에 기재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선사의 만족도(서식 제9호) 평가 실시

- 친환경 경영 참여도(10점)

구 분	평가점수
직전년도 저속운항 참여율이 60% 미만인 경우	0
직전년도 저속운항 참여율이 60% 이상~70% 미만인 경우	1
직전년도 저속운항 참여율이 70% 이상인 경우	2

☞ [참조1] 인증전담기관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인
☞ [참조2] 저속운항 참여율 산정공식 : 항만별 저속운항 실적 합계÷항만별 입항실적 합계

* 증빙서류 : 친환경 경영 계획서(서식 10호)

구 분(친환경경영계획서)	평가점수
- 환경규제에 대한 경영목표 및 실천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0
- 환경규제에 대한 경영목표 및 실천전략이 수립되어 있음	1
- 환경규제에 대한 경영목표 및 실천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2
- 환경규제에 대한 경영목표 및 실천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환류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3
- 환경규제에 대한 경영목표 및 실천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환류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친환경 선박 및 연료 전환을 위한 향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4

구 분(친환경 선박 및 연료전환 이행실적)	평가점수
친환경 선박 및 연료 전환을 위한 이행실적이 없음	0
친환경 선박 또는 연료 전환을 위한 이행실적이 있음	2
친환경 선박 및 연료 전환을 위한 이행실적이 있음	3

구 분(친환경 정부 정책 프로그램 참여)	평가점수
친환경 선박 전환지원,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글로벌 저탄소 선박 정책 대응 등 정부 정책프로그램 미참여	0
친환경 선박 전환지원,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글로벌 저탄소 선박 정책 대응 등 정부 정책프로그램 참여	1

☞ [참조] 기업이 제출한 실적에 대하여 인증전담기관이 검증

V 부 록

1 관련 서식

1. 인증 및 점검 신청서, 재발급 신청서 등

① 붙임 제1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신청서
② 붙임 제2호 인증 우수 선화주기업 점검 신청서
③ 붙임 제3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④ 붙임 제4호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2. 서식

① 서식 제1호 선화주 상생협력 사업계획서
② 서식 제2호 장기계약 체결 현황
③ 서식 제3호 주요 고객사 리스트
④ 서식 제4호 차별화 서비스 제공 현황
⑤ 서식 제5호 항로 배선 계획서
⑥ 서식 제6호 서비스 기항지 현황
⑦ 서식 제7호 고객대응프로세스 현황
⑧ 서식 제8호 설문지-화주사 평가
⑨ 서식 제9호 설문지-선사 평가
⑩ 서식 제10호 친환경 경영계획서

【붙임 제1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업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인증신청 사업분야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 화주		중소기업 해당여부	□ 중소기업	

「해운법」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2. 최근 3년간의 항로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인증전담기관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란 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평 가 → 심 사 → 인 증 → 통 지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인증전담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제2호】

인증 우수 선화주기업 점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업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검사기간	

「해운법」제47조2제5항 및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 우수 선화주기업 점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재무제표 1부 4. 그 밖에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처 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전담기관)		처리기관 (인증전담기관)		처리기관 (인증전담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제3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업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인증번호				
재발급 신청 사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손상된 인증서(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처 리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인증전담기관)) → 인증서 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제4호】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수 신: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

당사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귀 원이 보유한 당사의 정보(예. 이용 선박명, 물동량 등)를 인증전담기관에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수신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2) 사업명: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3) 제공목적: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신청 및 인증기간 동안 실적파악
4) 세부내역
 가. 제공항목
  - 선사, 선박명, 출발항, 도착항, 송하인, 수하인, MRN, MBL_NO, HBL_NO, 물동량(중량, TEU)
 나. 조회기간: 2019년 1월 ~ 동의일로부터 5년
 다.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5) 비용부담: 신청업체 부담

20 .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

붙임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식 제1호】

「*기업명*」
선화주 상생협력 사업계획서

본 서식은 심사항목 중 **리더십(선화주 상생 계획)**을 평가하기 위함으로 당해연도 귀사가 실천하고자 하는 선화주 상생협력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심사를 수행할 예정이오니 실천가능한 사항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목차는 예시로, 세부항목 및 내용은 자유롭게 변경 작성가능)

1 목표 및 비전

(작성예시) 귀사의 선화주 상생협력 목표 및 비전을 구체적으로 기입

□

○

2 세부전략

(작성예시) 귀사의 선화주 상생협력 목표 및 비전에 따른 단계별 세부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입

□

○

3 역량분석

(작성예시) 선화주 상생협력 구축을 위해 귀사의 내부 역량분석 등 기입

□

○

4 상생협력 프로그램

(작성예시) 귀사에서 관계계선도, 파트너십 체결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있거나 계획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입

□

○

5 기대효과

(작성예시)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개선지표(비계량지표_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계량지표_물동량, 협력사 만족도, 물동량, 수익증가분 등) 등 구체적으로 기입

□

○

6 실현가능성

(작성예시) 세부추진과제에 따른 추진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 구체적으로 기입

□

○

7 기타사항

(작성예시) 상기 부분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기타사항 등 기입

□

○

첨부: 제출(증빙) 서류 리스트

【서식 제2호】

「기업명」
장기계약 체결 현황

본 서식은 심사항목 중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장기계약 체결 비중, 최소약정물량 준수)**을 평가하기 위함으로 귀사의 장기계약체결 현황을 아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A. 장기계약 물동량 요약

(단위 : TEU, %, 건)

구 분	실 적[1]
장기계약 물동량[2]	
전체 물동량 대비 장기계약 물동량 비중[3]	
장기계약 체결 시 최소약정물동량 준수 비중[4]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5]	

※ 작성요령

1) 전년도 기준으로 해당 실적치 기입
2)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수출입물동량 기준으로 기입
   (현장심사 시 장기계약서 확인)
3)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를 이용한 전체 수출입물동량(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제공자료 참조) 중 장기계약을 체결한 물동량 비중을 산출하여 기입
4)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와의 장기계약을 이행한 실적 기준으로 기입
   (B. 장기계약 목록 양식의 (가)항목을 기입)
5)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와 장기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이용실적 횟수 기입

B. 장기계약 목록

(단위 : 개월, TEU, %)

선 사	계약번호[1]	기간[2] (개월)	최소약정물량[3] (TEU)	운송실적[4] (TEU)	준수 비중[5] (%)
합 계	-	-			(가)

○ 월평균 최소약정물량 10TEU 이상 장기계약만 기입, 필요시 양식 추가

※ 작성요령

1) 장기계약서의 우대운송계약번호(Service Contract Number) 기입
2) 전년도 해당 기간을 월 단위로 기입(예; '20.1.1 ~ '20.9.1 → 8개월)
3) 전년도 해당 기간의 최소약정물량을 기입(예; 50TEU/월 x 8개월 = 400)
4) 전년도 해당 기간의 운송실적을 기입
5) 준수 비중(%) = 운송실적(TEU)의 합 ÷ 최소약정물량(TEU)의 합 X 100

C. 장기계약 실적증빙(B/L) 목록

(단위 : TEU)

선 사	계약 번호[1]	B/L No.[2]	운송실적[2] (TEU)	비 고
합 계	-	-		

○ 장기계약 물량 증빙 B/L은 선적일이 전년도여야 하며 화물 및 항로가 장기계약 내용과 일치 및 운송실적(컨테이너 개수)이 확인 가능 해야 함

※ 작성요령

1) 장기계약서의 우대운송계약번호(Service Contract Number) 기입

2) 전년도 해당 장기계약 실적에 해당하는 전체 B/L No.와 운송실적 기입

【서식 제3호】

「기업명」
주요 고객사 리스트(선사)

본 서식은 심사항목 중 **상생 서비스 수준, 해운서비스 전략, 화주대응 수준** 등을 귀사의 주요 고객사(화주사) 대상으로 설문으로 평가하고자 하오니 당사의 주요 고객사와 대표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요 고객사	대표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제4호】

「기업명」
차별화 서비스 제공 현황(선사)

본 서식은 심사항목 중 **상생 서비스 수준(차별화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으로 귀사에서 타사 대비 제공하는 차별화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심사를 수행할 예정이오니 확인이 가능한 사항**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목차는 예시로, 세부항목 및 내용은 자유롭게 변경 작성가능)

1 경쟁력 있는 운임 제공

□

○

2 해외거점 터미널 확보

□

○

3 피더 네트워크 확보

□

○

4 친환경 · 고효율 선박 확충

□

○

5 복합운송연계 서비스 계획

□

○

6 부대서비스 제공 계획

□

○

첨부: 제출(증빙) 서류 리스트

【서식 제5호】

「기업명」
항로 배선 계획서(선사)

본 서식은 심사항목 중 **해운서비스 전략(항로배선 계획)**을 평가하기 위함으로 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항로배선 및 선복투입 계획, 실행가능성, 추진사항, 우선적 자원배분 등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심사를 **수행할 예정이오니 확인이 가능한 사항**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목차는 예시로, 세부항목 및 내용은 자유롭게 변경 작성가능)

1 항로배선 및 선복투입 현황

□

○

2 신규항로 개발 및 선복 투입 계획

□

○

3 니치항로 운영 계획

□

○

첨부: 제출(증빙) 서류 리스트

【서식 제6호】

「*기업명*」
서비스 기항지 현황(선사)

본 서식은 심사항목 중 **해운서비스 전략(항로배선 계획)**을 평가하기 위함으로 귀사가 제공한 기항지 수 및 현황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심사를 수행할 예정이오니 확인이 가능한 사항**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총 개수	현 황[1)]
기항지		*예. Busan, Hamburg*

※ 작성요령

1) 전년도 기준으로 공동운항과 국내 기항지를 포함하여 기입

【서식 제7호】

「기업명」
고객대응프로세스 현황(선사)

본 서식은 심사항목 중 **해운 서비스 전략(화주대응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으로 귀사에서 수행하는 고객(화주)대응프로세스 현황에 대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심사를 수행할 예정이오니 확인이 가능한 사항**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목차는 예시로, 세부항목 및 내용은 자유롭게 변경 작성가능)

1

(작성예시) 귀사가 고객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항을 기입(예. 우수 선화주전담팀 마련, 화물운송추적서비스, 고객지원서비스 매뉴얼, 직원교육 등)

□

○

2

□

○

3

□

○

첨부: 제출(증빙) 서류 리스트

【서식 제8호】

「기업명」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설문조사(화주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우수 선화주 인증을 신청한 ○○사에 대하여 주요 거래처인 선사가 체감하는 상생협력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인증심사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사의 상생협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 자료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평가용도로만 사용되며, 설문결과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A. 동반성장 노력도

※ 다음은 화주의 동반성장 노력도를 평가하기 문항입니다. 설문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매우 그렇다. 4 = 다소 그렇다. 3 = 보통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2점	3점	4점	5점
A1. 해당화주는 우리 기업과 정보를 수시로 교류한다.					
A2. 해당화주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은 동반성장(기업방문, 경영방침 등)에 대한 의지가 높다.					
A3. 해당화주는 적정운임을 보장한다.					
A4. 해당화주는 계약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A5. 해당화주는 선화주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A6. 해당화주와의 거래는 우리 기업의 경영성과에 도움을 준다.					
A7. 해당화주는 거래 시 대부분 backhaul 물량이 확보된다.					
A8. 해당화주는 우리 기업과 추가적인 위험부담, 비용 등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부담하려고 노력한다.					
A9. 해당화주는 우리 기업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와 같은 상거래 관련 규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공정거래 관련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A10. 해당화주는 계약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B. 일반사항

B1. 귀사가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① 원양항로(미국, 유럽향 등) ② 연근해항로(중국, 동남아향 등)

B2. 귀사의 매출액 규모는 얼마입니까?

① 500억 미만 ② 500~1,000억 미만 ③ 1,000~3,000억 미만 ④ 3,000~5,000억 미만
⑤ 5,000억 이상

♣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서식 제9호】

「*기업명*」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설문조사(선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평가서는 우수 선화주 인증을 신청한 ○○사에 대하여 주요 고객사로 부터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인증심사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사의 서비스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 자료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평가용도로만 사용되며, 설문결과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A. 서비스 품질

※ 다음은 선사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문항입니다. 설문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매우 그렇다. 4 = 다소 그렇다. 3 = 보통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2점	3점	4점	5점
A1. 해당선사는 다양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A2. 해당선사는 우리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A3. 해당선사는 운항의 정시성을 준수한다.					
A4. 해당선사는 운임 등 제반비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한다.					
A5. 해당선사는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A6. 해당선사는 화물사고발생 등 운항 중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					
A7. 해당선사는 클레임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A8. 해당선사는 시장변화에 적절한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A9. 해당선사의 선박 운항 스케줄은 믿고 신뢰할만하다.					
A10. 해당선사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B. 차별화 서비스

※ 다음은 선사의 차별화 서비스를 평가하기 문항입니다. 설문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매우 그렇다. 4 = 다소 그렇다. 3 = 보통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2점	3점	4점	5점
B1. 해당선사는 성수기에 적극적으로 선복을 제공한다.					
B2. 해당선사는 운임할인 방안을 강구한다.					
B3. 해당선사는 복합운송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B4. 해당선사는 니치항로를 운영하고 있다.					
B5. 해당선사는 맞춤화된 서비스(특별배선, free time 연장 등)를 제공한다.					

C. 고객관리수준 평가

※ 다음은 선사의 고객관리수준을 평가하기 문항입니다. 설문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매우 그렇다. 4 = 다소 그렇다. 3 = 보통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2점	3점	4점	5점
C1. 해당선사는 전화대기시간이 길지 않다.					
C2. 해당선사는 e-booking 등 정보시스템의 질이 높다.					
C3. 해당선사는 우리 기업에 대응하는 특정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다.					
C4. 해당선사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C5. 해당선사는 시장상황, 경쟁회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D. 일반사항

D1. 귀사는 다음 중 해당되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수출입기업(제조업 등) ② 서비스기업(국제물류주선업 등)

D2. 귀사가 주로 이용하는 항로는 무엇입니까?
① 원양항로(미국, 유럽향 등) ② 연근해항로(중국, 동남아향 등)

D3. 귀사의 매출액 규모는 얼마입니까?
① 500억 미만 ② 500~3,000억 미만 ③ 3,000~5,000억 미만 ④ 5,000억~1조 미만
⑤ 1조 이상

♣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서식 제10호】

「기업명」
친환경 경영 계획서

본 서식은 심사항목 중 귀사의 해운산업 친환경 정책 기여도를 평가 하기 위함으로 환경목표 및 전략, 친환경 선박 및 연료 전환 실적, 친환경 정부 정책 프로그램 참여 실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심사를 수행할 예정이오니 실천가능한 사항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목차는 예시로, 세부항목 및 내용은 자유롭게 변경 작성가능)

1 친환경 경영 목표 및 실천전략

(작성예시) 환경 경영 관련 귀 사의 목표 및 비전, 실천절략, 각 실천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 및 방안(추진내용, 일정, 소요예산 등), 기대효과, 향후 투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2 친환경 경영 환류 계획

(작성예시) 각 세부추진 과제별 평가지표, 평가 지표 별 과거 실적 및 향후 전망·점검 계획 등

□

○

3 친환경 선박 및 연료전환 이행 실적

(작성예시) 최근 3개년도 친환경 선박 및 연료 전환 이행 실적 등

□

○

4 친환경 정부 정책 프로그램 참여 실적

(작성예시)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 선박 전환지원 사업,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글로벌 저탄소 선박 정책대응사업 참여 실적 등

□

○

첨부: 제출(증빙) 서류 리스트

2 관련 규정

[해운법]

제47조의2(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이하 "선화주(船貨主)기업"이라 한다)의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하는 경우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체결 여부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 · 절차 · 방법 · 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 법에 따른 과태료 3회 이상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7조의2제4항의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인증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47조의2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제47조의7에 따른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5.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인증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7조의5(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제47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정하여 인증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 ·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7(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4의2. 제4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 ·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한 자

5. (생 략)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화주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23조의3(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이하 "인증요건"이라 한다)을 유지하는지를 그 인증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의 전날까지를 말한다) 점검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 외에 연 1회에 한정하여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해당 기관의 업무 내용에 해운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 연락처, 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 및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2.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23조의5(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에 따라 인증기업에 대해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최근 3년간의 항로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6조의7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다라 지정된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인증전담기관은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 · 물류 ·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⑤ 인증전담기관은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 · 물류 ·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제26조의7(인증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영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①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표시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 · 용기 · 홍보물 등에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의6제2항에 따른 고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전담기관"이란 「해운법」 제47조의4 및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보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3.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심사위원회”란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설치 ·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세부 심사기준”이란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을 바탕으로 인증전담기관이 정하는 세부심사항목별 평가점수의 배분,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말한다.

제3조(신청기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3항 및「해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2 각 호의 자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1과 같다.
② 평가점수의 세부심사항목별 배분은 별표1의 배점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세부 심사기준에서 정한다.
③ 영 제23조의3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인증심사위원회)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해운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인증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 및 인증전담기관 소속 인증업무 담당 부서장
2. 민간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해운 · 물류 · 무역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해운 · 물류 · 무역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다. 해운 · 물류 · 무역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
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평가단 구성의 적정성
2. 인증심사의 적정성
3.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4. 그 밖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인증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인증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인증평가단의 구성)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50명 이상의 인증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해운·물류·무역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해운·물류·무역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해운·물류·무역 관련 공공기관의 차장급 이상으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별로 제1항의 인증평가단 중 3명 이상의 인증평가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인증평가위원은 인증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인증평가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인증심사의 수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 및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전담기관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은 그 의결 및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 및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인증평가위원이 제척 · 기피 · 회피되는 경우 인증평가위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전담기관의 업무) 인증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심사위원회 및 인증평가단의 구성 · 운영
2. 인증심사 및 점검 계획의 수립
3. 인증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마련
4.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제12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접수 및 확인
6. 인증심사위원 및 인증평가위원의 수당지급 등 심사업무의 지원
7.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9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별표 1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심사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것
2.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 심사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1등급, 70점 이상인 경우 2등급의 인증을 부여한다.
④ 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인증 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인증전담기관은 인증평가단을 새로 구성하여 인증신청기업이 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기한은 60일로 한다.

제11조(인증마크) 법 제 47조의6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2와 같다.

제12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규칙 제26조의8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손상된 인증서(인증서가 손상된 때에 한한다)

②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기업의 점검 등)

① 규칙 제26조의9제1항에 따라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우수 선화주기업 점검 신청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점검을 통해 인증기업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기업은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증기업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⑥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운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인증전담기관은 제6항의 수시점검을 위해 인증기업으로부터 제6항 제2호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요청 시기는 인증서를 받은 해의 다음년도부터 물동량 통계,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등이 확정된 이후로 한다.

⑧ 인증전담기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규칙 제26조의9에 따라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하며,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기업은 규칙 제26조의6의 절차를 따른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인증심사위원회, 인증전담기관, 인증평가단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의 구성원, 제5조의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및 제6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화주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운송비용 및 해상운송비용은 「해운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일 것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것

③ 법 제104조의30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신청방법)

01 신청방법

- (1단계) www.bandtrass.or.kr 사이트 접속 후 사업자회원가입(무료회원)
- (2단계) 공인인증서(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로그인
  *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범용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모든 인증서 가능(공인인증서 등록 별도로 할 필요없이 로그인 시 사용)
- (3단계) 메인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안내] → 하단에 [주문형 통계 신청]으로 신청서 작성
- (4단계) 확인서 발급 후 인증전담기관에 제출

구분	확인서(발급서류 명칭)	부수
화주사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	1부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 현황	1부
선주사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	1부

☞ 문의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3)

02 발급서류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화주용)

신청업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인증대상	수출입기업 □ / 국제물류주선업 □			
확인기간	2021년 00월 00일 ~2023년 00월 00일(3년간)			

(단위 : TEU)

		원양항로						연근해항로					
		수출		수입		계		수출		수입		계	
			환적		환적		환적		환적		환적		환적
전체 물동량	2000년												
	2000년												
	2000년												
	합계 환적												
외항 정기 화물 운송업자 이용 물동량	2000년												
	2000년												
	2000년												
	합계 환적												

귀사의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장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 이용 현황(화주용)

신청업체	

(단위 : TEU)

구분	이용업체명	2022년 월별	물동량
1	해운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	해운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귀사의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장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선사용)

신청업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확인기간	2020년 00월 00일 ~2022년 00월 00일(3년간)			

(단위 : TEU)

	원양항로		연근해항로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환적	환적	환적	환적	환적
2000년					
2000년					
2000년					
합계					
환적					

귀사의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장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가이드북[2024년 개정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

발행일 2024년 6월 25일

발행처 한국해양진흥공사 www.kobc.or.k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7층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담 당 사업관리부 정책지원팀 051-795-1652
E-mail : cmkim@kobc.or.kr